

## 제15차 노인인권포럼 토론회자료 (24.4.24.)

주제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안 마련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 순서

- I . 토론문
- II . 돌봄통합지원 주요내용과 입법사항의 연계
- III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IV .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돌봄과의 연계

# I. 토론문 - 1

## 돌봄통합지원과 「노인복지법」의 연계 : 現 「돌봄통합지원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現 「돌봄통합지원법」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를 위한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 통합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제공 등 주거지원 서비스
  -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서비스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수진 의원님 등께서 '21년 ~ '23년도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노인건강 상태 확인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및 ‘노인 주거지원 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발의하여 '24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음
- 現 「돌봄통합지원법」은 제21대국회 임기가 임박한 '24년 2월말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법 시행은 2년 후인 '26년 3월임(단, 시범사업은 즉시 시행),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어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가 규정될 예정임.
- 「노인복지법」이 現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통합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전국의 시범사업 사례 등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 돌봄통합사업 : 일상생활,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편의, 일시보호서비스

# I. 토론문 - 2

---

## 現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26년 3월) 하기 전에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

- 「돌봄통합지원법」은 '26년 3월 시행하기 전에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중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주요사항인 통합지원 서비스 범위,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의료적 필요도, 영양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주요 사항인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분야별 서비스 관련 구체적 규정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
- 현재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지역의 통합돌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에 필요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 처럼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적되었음

# I. 토론문 - 2 (참고자료 1)

現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26년 3월) 하기 전에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 (참고자료)

## 朝鮮日報

2024년 4월 22일(월)

### 시 전체 96개 동에 사회복지사·간호사 배치...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통합돌봄' 시스템 큰 호응

“올해부터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각 구별로 거점형 공간을 운영할 계획”

광주시 통합돌봄 시스템전국으로 확산될 듯

통합돌봄 2년째인 광주시는 올해부터 이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 돌봄은 100%에서 120%로 늘렸다. 식사지원단가도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가사를 돌볼 때 지급하는 비용도 3400원을 올려 시간당 2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도 긴급하다. 이와 같은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위한 지원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 신청주의'였다. 더 나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요원들이 먼저 찾아가 어려움을 살펴 빈틈을 메우고 있다.

김경명 시통합돌봄팀장은 “올해부터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각 구별로 거점형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이돌봄·노인맞춤돌봄·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다 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서비스를 하는 '틈새돌봄'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환·감염병·폭력성향 등 고난이도 긴급상황때 도움을 주는 '긴급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통합돌봄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 I. 토론문 - 2 (참고자료 2)

現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26년 3월) 하기 전에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기반구축이 필요 (참고자료)

## <서면 질의>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대상 : 보건복지부 / 10. 20.(수)

### 13.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관련 새로운 모델 발굴 방안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 있어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의료와 복지의 통합모델, 조합원 자원봉사와 협동을 통한 존엄케어 모델 확립 방안, 이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모델 구축 방안 등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 재활, 노동, 가족커뮤니티, 교육을 포괄하는 윈스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형 모델, 인구 30만 기준 중소도시에서 의료사협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도농형 모델, 광역도시와 준광역도시에서 의료사협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내 다양한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도시형 모델 등이 제안되고 있음.
- Q)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중앙정부-지방정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모델 추진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

< 김성주 의원 >

통합돌봄추진단

1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협력모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통합돌봄추진단 이관형 사무관(044-202-3031)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민·관 협업 사례로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된 5개 지역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노인주치의, 지역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 경기 안산시·화성시·부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25개(11%) 지역에 존재하며, 그 중 돌봄관련 사업소(장기요양센터, 가정간호사업소 등) 운영 조합은 약 10개
- 또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은 지역의사회·약사회 및 지역 내 요양병원·요양원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향후에도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I. 토론문 - 3

## 지역 인구 위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돌봄 추진사업의 사례 확인 필요

- 2020년도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취약생활 서비스 조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면기준으로 58.9%가 나왔으며, 소매 서비스 등 기타서비스가 20% 이내로 각각 나온 것을 토대로 볼 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월등하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70억원의 통합돌봄 국고지원이 투입된 통합돌봄시범사업에서는 총 21개 지방자치단체(19년~22년 16개소, 23년 ~ 24년 12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 및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경북 의성군 한군데 뿐임.  
2024년도 12개 자치단체의 평균 국고지원액이 5억 3,200만원인데 비하여 경북 의성군은 평균이하인 5억 2,500만원을 지원받았음
- 국고가 투입된 시범사업이 아니지만 지자체가 자체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 (23년 10월 기준 74개소) 중 인구감소지역(강원도 고성군, 횡성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상 기본계획(인프라 서비스 확충방안, 지자체 지원 등)을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음

# I. 토론문 - 4

##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 관계 법령개정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 현행 「돌봄통합지원법」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통합돌봄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2024년도 기준 통합돌봄 사업의 국비(국가) 및 시도비(광역)의 매칭비율이 기초지자체 별 재정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예) A시 : 32:0:68 // B시 : 44:13:43 // C구 : 50:25:25
  -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같은 국고보조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고지원비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국고를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참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함
- 또한,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 등 돌봄관련 사업의 재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Ⅱ. 돌봄통합지원과 입법사항의 연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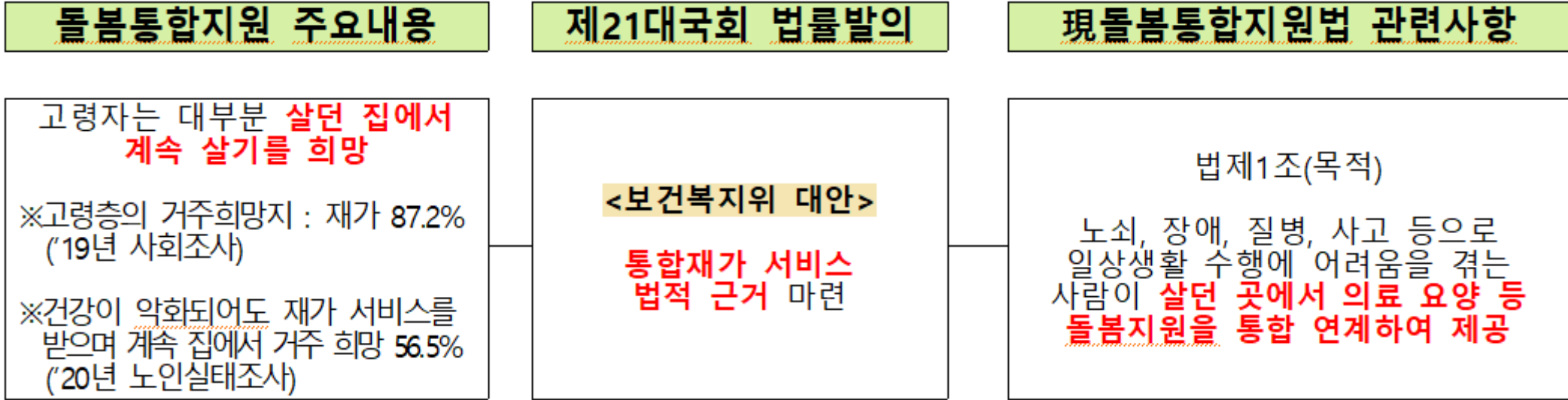
### 돌봄 통합지원의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률

돌봄통합지원 주요내용	제21대국회 발의법률	現돌봄통합지원법 관련사항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방식(정보체계)  의료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b>정보 공유 및 ICT 지원</b> 필수	<b>&lt;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gt;</b>  노인 건강 상태 확인 <b>정보통신 기술 서비스</b>	제18조(일상생활 돌봄) 제5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 <b>사물인터넷</b> 등 <b>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b>
쇠약해진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b>주택환경 미흡</b>  (의료돌봄통합)보건의료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제공자간 통합 <b>-책임의료기관 -지역자활센터(주택개보수)</b>	<b>&lt;이용빈 의원, 하영제 의원, 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gt;</b>  노인 <b>주거지원 서비스</b>	제18조(일상생활 돌봄) 제6호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 건강 상태를 고려한 <b>주거 공간의 확보 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b>

現行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6. 공포)의 약칭「돌봄통합지원법」

## Ⅱ. 돌봄통합지원과 입법사항의 연계 - 2

### 돌봄 통합지원의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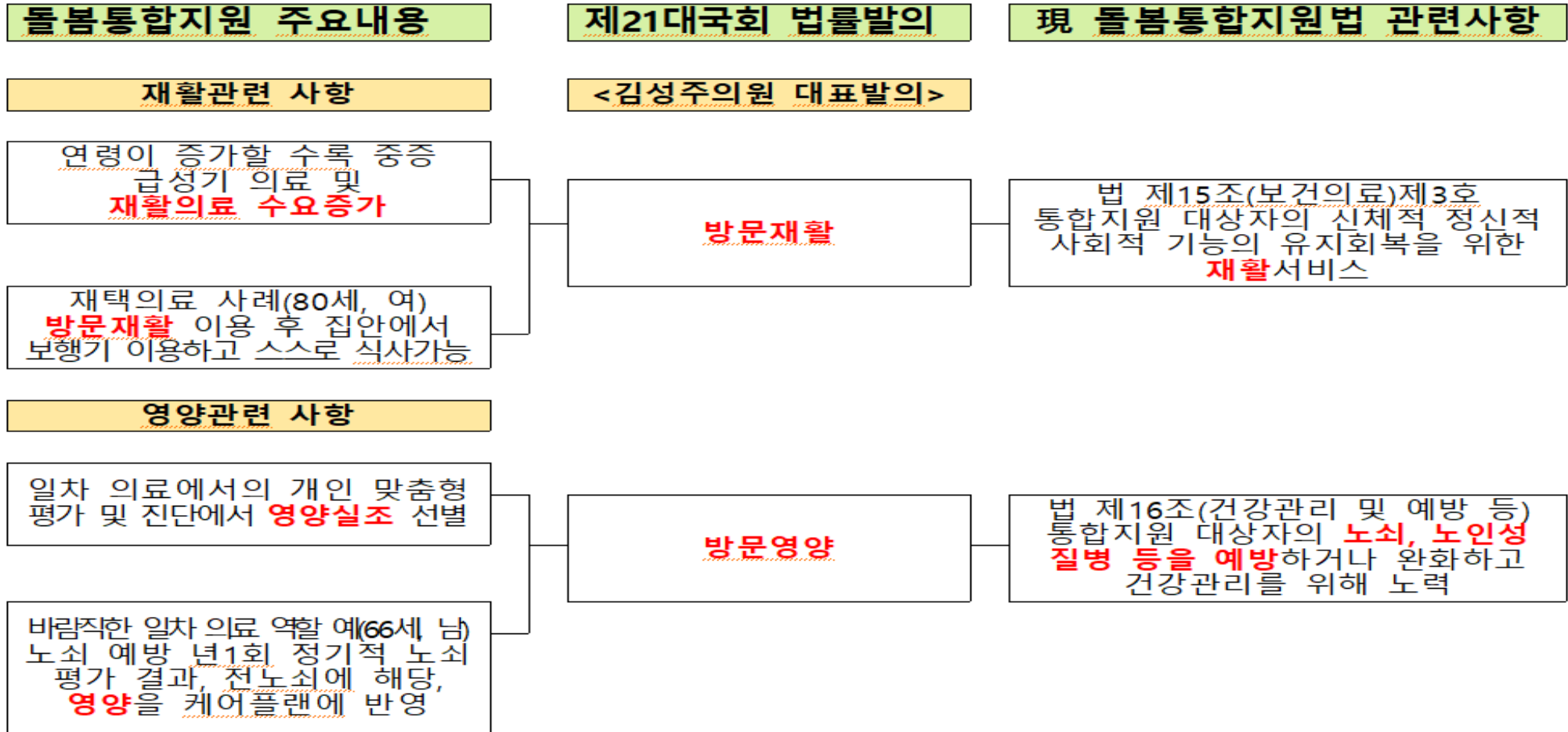


#### \* 참고 : 돌봄통합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연계 조항

통합돌봄지원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계조항	조문내용
제10조 (신청,발굴 및 조사 등)	○ 시·군·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신청이 기각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음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입소)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퇴소)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
제17조 (장기 요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재가 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
제28조 (비용지원 및 부담 등)	○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Ⅱ. 돌봄통합지원과 입법사항의 연계 - 3

### 돌봄 통합지원의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법률



## Ⅱ. 돌봄통합지원과 입법사항의 연계 - 4

### ○ 주요법률 국회심사 현황 (2024년 4월 19일 현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위원회 회부 및 소위원회 회부

이수진 의원  
(제안 23.12.7.)

노인건강 상태 확인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이용빈 의원  
(제안 23.7.13.)

노인주거 지원 서비스

하영제 의원  
(제안 23.2.10.)

노인주거 지원 서비스

강기윤 의원  
(제안 21.1.22.)

노인주거 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23.12.8.), 시행(24.7.3.)

보건복지위 대안  
(제안 23.12.7.)

통합재가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위 상정

김예지 의원  
(제안 22.11.25.)

재가급여에 방문  
의료 안마 추가(재활)

김성주 의원  
(제안 21.4.29.)

방문 영양  
방문 재활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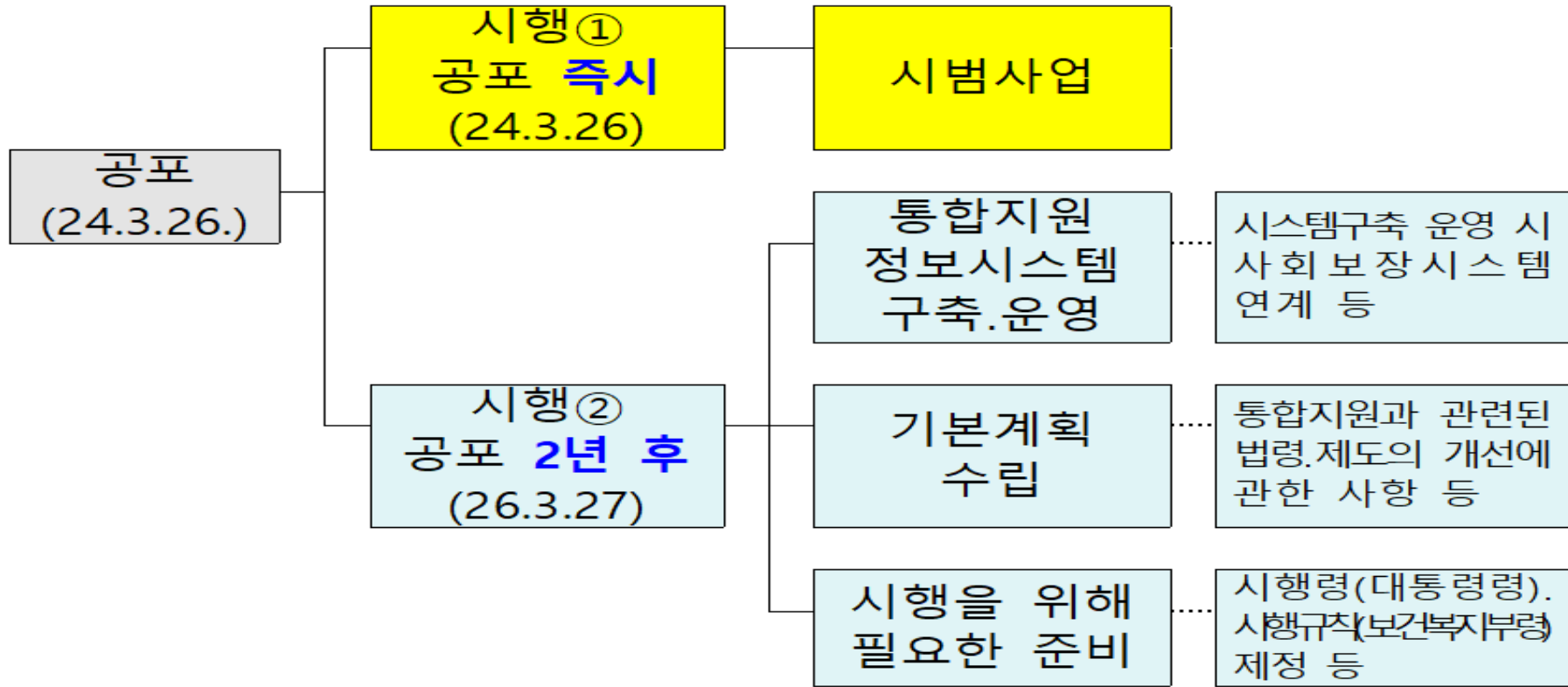
## 1. 법률안 발의 및 심사경과

법안명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발의일)	심사경과 (법안연번 ① ~ ⑧)
①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정춘숙의원, 2104946, '20.11.4.)	<b>&lt;보건복지위원회 심사&gt;</b> ■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21-2-27 ①      21-11-11 ②      23-9-18 ③~⑤ ■ 소위직접회부 23-9-15 ⑥      23-12-15 ⑦
②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전재수의원, 2111356, '21.7.6.)	
③ 지역돌봄보장법안 (남인순의원, 2121940, '23.5.11.)	■ 공청회 23-2-24 ① ~ ②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2122302, '23.5.26.)	■ 제2법안심사소위 심사
⑤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의원, 2123246, '23.7.13.)	23-4-26 ① ~ ②      23-9-19 ① ~ ⑥      23-11-21 ① ~ ⑥
⑥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최재형의원, 2124407, '23.9.12.)	23-12-19 ① ~ ⑦ 의결: 대안반영폐기
⑦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의원, 2125596, '23.11.24.)	■ 전체회의의결 23-12-20 ①~⑦ 의결: 대안반영폐기      ⑧ 의결: 대안가결
⑧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2126565, '23.12.20. 상정) *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b>&lt;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gt;</b> 24-2-29 수정가결  <b>&lt;본회의 의결&gt;</b> 24-2-29 원안가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임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2

## ○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법 부칙 제1조 ~ 제2조)



돌봄통합지원법은 시범사업이 '19년부터 진행중임

- '19.6월 ~ '22.12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 지자체, 총 573억원 투입
- '23.7월 ~ '25.12월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자체, 총 97억원 투입(2024년까지)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3

-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  
(보건복지부 장관 –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계획수립 (주요 내용)	연계	심의 -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서비스 확충방안</li> <li>○ 통합지원 전달체계</li> <li>○ 관련 법령.제도 개선</li> <li>○ 지자체 지원</li> <li>○ 전문인력 양성</li> <li>○ 자원 조달 및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기본법§16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li> <li>○보건의료기본법§15 (보건의료 발전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3 (저출산고령사회 <u>위원회</u>) <u>심의</u></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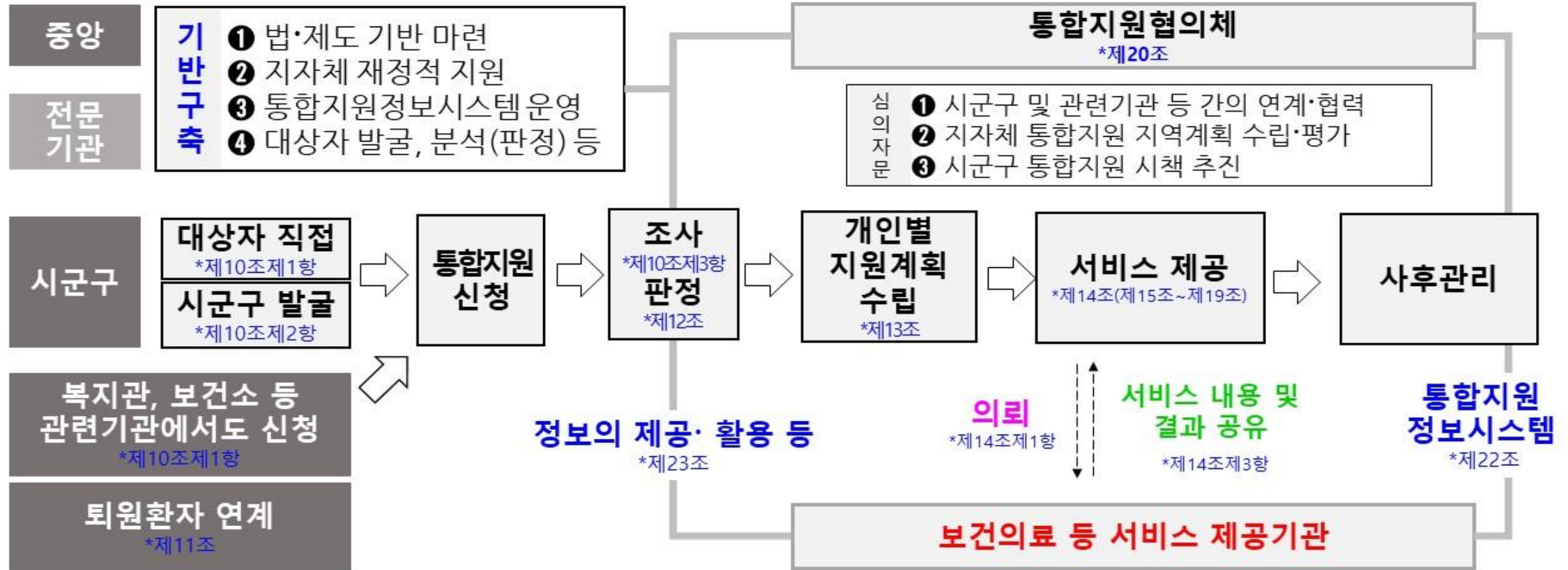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3.7월부터)은 시군구 본청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 중점 수행

\* 자료 : 보건복지부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4

## ○ 돌봄통합지원법 개념도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5

### ○ 보건의료 등 서비스 제공 (제15조 ~ 제19조)

#### 보건의료(제15조)

- 의료법 (진료,간호,요양의료)
- 약사법 (복약지도)
-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 재활, 방문구강관리

#### 건강관리 및 예방 등(제16조)

#### 장기요양(제1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성질환예방,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 일상생활돌봄(제18조)

- 사회보장급여법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등

#### 가족 등 지원(제19조)

제15조 ~ 제18조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Ⅲ.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6

## ○ 대통령령(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대통령령 위임조항	조문내용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 서비스 범위 규정</li> <li>○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규정</li> <li>○ 통합지원 관련기관 범위 규정</li> </ul>
제12조(종합판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 규정 (의료적 필요도, 영양돌봄 필요도 등)</li> </ul>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위탁</li> </ul>

보건복지부령 위임조항	조문내용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사항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등 필요사항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 신청.발굴 및 조사 등 통합지원 필요사항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필요사항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 통합지원 제공 연계 등
제15조(보건의료)	○ 보건의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에 규정
제17조(장기요양)	○ 장기요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 일상생활 돌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22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 규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IV.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돌봄과의 연계 - 지역

## ○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지 (2019년 ~ 2024년) 2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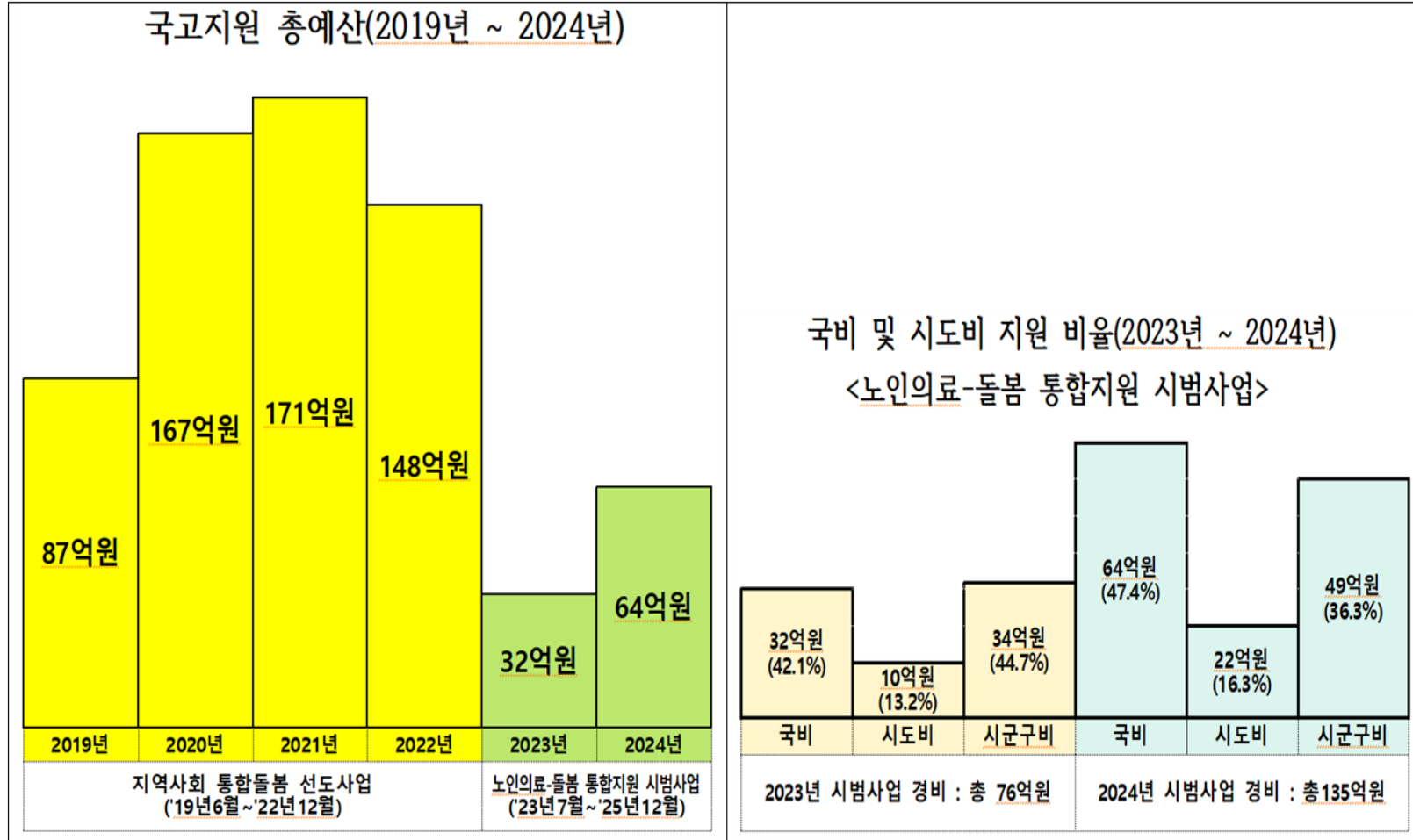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은 경북 의성군 1개소로서 인구감소지역 사업성과 확인 필요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시 인구감소지역의 돌봄서비스 인프라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지자체의 자체 통합돌봄 사업 실시지역(인구감소지역 포함)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 (서울, 인천, 울산, 강원은 시범사업 실시 않음)

# IV.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돌봄과의 연계 - 재정

## ○ 통합돌봄 시범사업 재정지원



국비 및 시도비 매칭비율이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

'24기준 매칭비율 예시

(국 : 시도 : 시군구)

- A시 : 32: 0 :68

- B시 : 44:13:43

- C구 : 50:25:2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검토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유연하게 지원하여 지속적 정책시행 필요

계획 수립 시 관련사업 연계를 통해 지자체별 여건 및 역량에 따른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

출처: 보건복지부, 12개 기초자치단체